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한 국 수 출 입 은 행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(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2항 3호), 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할 수 있음(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(대외채무보증)).

최근 우리기업의 수주형태 변화,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연간 지원한도가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무역보험 지원규모의 35%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, 개별 거래에 대해 대출금액이 50%를 초과하는 거래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보증 지원이 필요한 거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수주 관련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9. ~ 2. 2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사전심사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발주처 또는 수입자를 비롯한 사업참여자의 보증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
3.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관계부처, 수출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래

제16조 제2항 중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“100분의 35”를 “100분의 50”을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대외채무보증) ① 법 제18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	(현행과 같음)
1.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	(현행과 같음)
2. <u>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거래</u>	2. <u>발주처 또는 수입자를 비롯한 사업참여자의 보증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재국의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</u>
3. <u>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은행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협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이에 동의하는 거래</u>	3. <u>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관계부처, 수출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래</u>
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<u>100분의 35</u> 를 초과할 수 없다.	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<u>100분의 50</u> 을 초과할 수 없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7612